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경고)·시정

제 목 소방청사 건립 시공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훈계(경고) ① 울산광역시 ○○본부 ○○○○과 지방○○○ ○○○

대 상 자 (전 ○○소방서 ○○○○과 ○○○○계)

② 울산광역시 ○○소방서 ○○○○과 지방○○○ ○○○

③ 울산광역시 ○○소방서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6. 7. 4.부터 2017. 6. 30.까지, 지방○○○ ○○○은 2015. 7. 1.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소방서 소○○○○과 ○○○○팀에서 담당계장(지출원)과 계약업무 담당자로, 지방○○○ ○○○는 2017. 4. 12.부터 2017. 11. 30.까지 ○○소방서 ○○○○○센터 신축공사 감독공무원으로 각각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소방청사 건립 시공관리 및 지출결의서 작성 등 업무 소홀

울산광역시 ○○소방서에서는 “○○○○○○센터 신축 건축공사” 시행을 위해 2017. 4. 7.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주)(대표 ○○○)과 총 공사 부기금액 1,478,481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2. 감독공무원¹⁾을 임

1) 감독공무원(건축,토목,기계,소방) : ○○○ ○○○

명, 2017. 4. 14. 착공하여 2017. 11. 30. 준공하였다.

가.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소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²⁾ 제4장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시공사로부터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공사 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³⁾하여 승인 후 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따라 5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직접시공계획⁴⁾”을 작성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같은 법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473호(건설공사 사업관리 관련 지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공사착수 및 시행, 안전 및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업무를 정함)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다)

4) 직접시공계획 :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접시공 비율을 높임으로서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 목적에 의함

5) 같은 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3항(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는 건설도급업자가 “직접시공계획” 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거나 또는 미제출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19안전센터 신축 건축공사”건에 대하여 2017. 11. 30. 준공처리하고 총 도급금액 1,478,481천원에서 설계변경·보험료 등 정산 금액 18,600천원을 감액하고 1,459,800천원을 공사 준공대금으로 지출하였다.

나. 지출결의서 작성 등 업무 태만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시기에 대하여, 계약 시에는 계약체결과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지출결의서에 재무관(분임재무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청구하고, 같은 규칙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련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설계변경·보험료 정산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액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확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는 “○○000○○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단일지출원인행위와 관련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하면서 최초의 지출결의서와 다른 지출결의서의 연관성을 명백히 하지 않고 [표1]과 같이 지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1] ○○000○○센터 신축 건축공사 대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노무비	재료비	하도급(1건)	선금금	비 고
총 계	1,459,880	510,444	507,636	41,800	400,000	
선 금 금	400,000				400,000	
기성 1회	39,170	15,699	23,470			
기성 2회	68,955	34,573	34,382			
기성 3회	152,026	90,870	61,156			
기성 4회	192,686	128,733	63,953			
기성 5회	153,009	75,559	77,450			
기성 6회	259,994	84,799	133,395	41,800		
준 공 금	194,037	80,211	113,826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총계금액 불일치 : 천원 단위 절사에 의함)

○○소방서 ○○000○○센터 신축공사 시 [표2]와 같이 9건(최초원인행위 4건, 설계변경 1건, 보험료 등 정산 4건)의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최초의 지출결의서 및 증·감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관(분임재무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준공 청구금액으로 단일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준공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출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하였다.

[표2] ○○000○○센터 신축공사 원인행위 변경 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 준공금액	최초원인행위금액	설계변경 1회 (감액)	보험료 등 정산 (감액)	비 고
건축공사	1,459,880	1,478,481	13,288	5,311	
전기공사	110,220	114,217		3,997	
통신공사	47,989	49,535		1,546	
소방공사	19,213	19,832		619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총계금액 불일치 : 천원 단위 절사에 의함)

2. 하자검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하자보수관리부⁶⁾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금 등 대금 지급은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상 담보책임이 있는 계약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시스템” 계약관리 > 공사하자관리 > 공사하자등록에 하자보수보증금, 담보기간, 보증유형 등 하자보증내역을 등록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소방서에서는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000지역대 차고문 조달 요청 교체 공사” 등 29건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지정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액을 집행하였으나,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

6) 하자보수관리부 :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일,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

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를 못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 없이 [표3]과 같이 29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하자검사 미실시 대상

연번	사업명	계약금액 (천원)	준공일	하자담보 존속기간			검사부서
				담보기간	시작일	종료일	
1	○○119지역대 차고문 조달 요청 교체	6,108	2015.02.05	1년	2015.02.05	2016.02.04	○○소방서
2	○○ 승강기 설치공사	60,918	2015.06.25	3년	2015.06.25	2018.06.24	"
3	○○지역대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	11,792	2015.06.03	3년	2015.06.03	2018.06.02	"
4	○○구조대 호스건조대, 오버헤드도어	8,082	2016.12.17	1년	2015.12.17	2016.12.17	"
5	○○구조대 증축 통신공사	9,812	2015.11.30	2년	2015.11.30	2017.11.29	"
6	○○구조대 증축 전기공사	19,910	2015.11.30	2년	2015.11.30	2017.11.29	"
7	○○ 2층 창호교체공사	32,635	2015.11.13	1년	2015.11.13	2016.11.11	"
8	○○구조대 오버헤드도어 안전장치	5,935	2015.11.27	1년	2015.11.27	2016.11.26	"
9	○○소방서 본관 1층 LED전등교체공사	9,641	2016.12.21	1년	2016.12.21	2017.12.20	"
10	○○119지역대 이전신축 공사(건축분야)	599,726	2017.09.26	5년	2016.09.23	2022.09.22	"
11	○○119지역대 이전신축 전기공사	29,468	2017.09.26	1년	2017.09.27	2018.09.26	"
12	○○119지역대 이전 신축 통신공사	10,978	2017.09.26	1년	2017.09.26	2018.09.25	"
13	○○동119지역대 이전 신축 소방공사	5,764	2017.09.26	2년	2017.09.23	2019.09.22	"
14	○○119지역대 이전 신축공사(건축)	599,726	2017.09.26	5년	2016.09.23	2022.09.22	"
15	○○소방서 지하층 방수관련 공사	41,328	2017.06.15	3년	2017.06.20	2020.06.19	"
16	○○119안전센터 차고지 도장 공사	9,760	2017.06.26	1년	2017.06.26	2018.06.25	"
17	○○청사 LED 조명 교체 공사	9,490	2017.06.23	1년	2017.06.23	2018.06.22	"
18	○○청사(○○,○○,○○)구조보강 공사	63,371	2017.12.11	5년	2017.12.11	2022.12.10	"
19	PTSD예방 심신안정실 공사(전기)	8,140	2015.12.10.	1년	2015.12.11.	2016.12.09.	○○소방서
20	○○차고동 창고 대기실 변경 작업	6,270	2015.12.07.	1년	2015.12.07	2016.12.06.	"
21	○○안전센터 청사보안용 CCTV공사	6,111	2016.02.12.	1년		2017.02.11.	"
22	○○센터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 공사	5,060	2016.03.24	1년	2016.03.25	2017.03.24	"
23	심폐소생술교육장 공사(건축,기계)	16,730	2016.06.07	1년	2016.06.08	2017.06.07	"
24	심폐소생술교육장 시설보강공사(전기)	10,584	2016.06.08	1년	2016.06.17	2017.06.16	"
25	○○119안전센터 오수관로 연결공사	7,920	2016.05.30	1년	2016.05.30	2017.05.30	"
26	○○ 식당확장 및 휴게실 칸막이 공사	10,670	2016.06.16	1년	2016.06.17	2017.06.16	"
27	○○119안전센터 청사 보수공사	6,209	2016.09.26	1년	2016.09.27	2017.09.26	"
28	○○센터 매연배출시스템 방음실 설치	5,189	2016.11.04	1년	2016.11.05	2017.11.04	"
29	○○소방서 야외체험장 바닥데크 교체	10,243	2016.11.18	1년	2016.11.19	2017.11.18	"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표4]와 같이 77건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4] 하자 최종검사 현황

검사기관	검사대상		최종검사	검사기관	검사대상		최종검사	비고
○○소방서	2015년	2건	미실시	○○소방서	2015년	6건	미실시	
	2016년	11건	"		2016년	10건	"	
	2017년	5건	"		2017년	22건	"	
○○소방서	2015년	3건	검사완료	○○소방서	2015년	2건	"	
	2016년	10건	2건 미실시		2016년	4건	"	
	2017년	12건	미실시		2017년	1건	"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담보 책임이 없음에도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48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각 소방서별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훈계(경고)] 위 관련자들을 훈계(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000○○센터 신축 건축공사”와 관련, 발주처에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과태료 처분 등 시정조치하고,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